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 20220152
최초 등록일 : 2022.02.23
최종 등록일 : 2024.04.29

<http://mymasters.net/>

공작인

정 보 공 개 서

(주)마이마스터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9.

(주)마이마스터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305호

[대표 전화번호] 02-6426-8000

[대표 팩스번호] 02-6926-0609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 02-6426-800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마이마스 터즈	공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305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8.11	2014.8.18	김광신	02-6426-8000	02-6926-0609
	법인등록번호	110111-5487263	사업자등록번호	105-88-0722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광신/마이마스 터즈	공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광신	02-6426-8000	02-6926-0609
	법인등록번호	110111-5487263	사업자등록번호	105-88-07228	
사내이사	이하민/마이마스 터즈	공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광신	02-6426-8000	02-6926-0609
	법인등록번호	110111-5487263	사업자등록번호	105-88-0722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공작인]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공작인	크래프트 상품 판매
상 호	공작인 OO점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0-1858536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965,328,026	1,109,479,842	855,848,184	2,514,213,805	105,632,261	76,931,171
2022년	2,312,875,756	1,340,511,725	972,364,031	3,281,234,034	155,340,229	101,484,618
2023년	2,667,540,239	1,579,723,735	1,087,816,504	3,899,353,470	173,301,112	103,341,349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이 없어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김광신	대표이사	2017년 ~ 현재	대표	사업총괄
관련 임원	이하민	이사	2017년 ~ 현재	이사	사업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등록 (2022.04.19)	제40-1858536호	(주)마이마스터즈	2032.04.1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 사실 없음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마이마스터즈	공작인	김광신	가맹계약 체결사실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305호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공작인	대분류	소분류
	기타 도소매	공예품, 가구, 패션잡화, 의류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0	3	3	0	3	1	0	1
서울	2	0	2	2	0	2	1	0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0	1	1	0	1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공작인] 외에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2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2년말 가맹점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공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공작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2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지사 모집계획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8. 광고 및 판촉 활동' 을 참고하십시오.

(해당사항 없음)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광고	소계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귀하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주)우리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212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일 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마이마스터즈"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		내용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은행방문 → ③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뱅킹 이용 시	①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인터넷뱅킹 접속 → ③(기업뱅킹)클릭 → ④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클릭 → ⑤(가맹점사업자 서비스페이지 바로 가기)클릭→ ⑥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가맹금 이체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우리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우리은행]과 가맹금 예치금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의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5,500	계약체결일로 부터 1일 이내	계약 체결 후 반환되지 않음	- 당사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20%) - 영업표지 사용의 허락에 대한 대가(30%) - 매뉴얼 등 자료제공의 대가(40%) - 기타 개업지원의 대가(10%)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3,300	계약체결일로 부터 1일 이내	교육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8,800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 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15,000	계약체결일로 부터 1일 이내	- 가맹금,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 영업표지 철거 기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보증보험 대체 가능
총계	15,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현금)보증금	15,000
합계	23,800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시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①	지급대상 ^②	금액 ^③	면적 33㎡당 금액 ^④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⑤
총계		[62,500 ~ 80,0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	40,000	1,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50% 완료후 5일 이내 50%	공사 전 계약취소	40평 기준
간판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	7,5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설비/가구 의탁자, 진열대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	13,0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F&B가 포함될 경우 (커피기기, 제빙기 외)
개설 마케팅 지원 비용	가맹본부	1,0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미실행 시	미디어 기사, 인스타그램 마케팅 기타
소모품	가맹본부 혹은 지정업체	1,000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포장 및 비품
개점준비물품	가맹본부	2,000		계약금(70%) : 가맹 계약 체결 후, 3일 전까지 잔액(30%) : 개설 3일 전까지	발주 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직영점 운영모델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확인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기본적인 매뉴얼 숙지 가능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당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	------	----	------	------	-------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일반상품 거래금액의 10%	익월 5일 이내	미반환	후불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통지 후 7일 이내	실시 후 미반환	실시 후
개점 후 수시 교육비	가맹본부	실비	통지 후 7일 이내	교육 전	교육 후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미반환	후불
카드결제기	지정업체	별도계약	약정일	미반환	후불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기준 :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여부, 매출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 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맹점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초 계약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I, 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귀하의 가맹점 내의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귀하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신규개설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를 원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영업양수인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영업양도일 이전까지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 간판, 이미지물(점포 내·외부 POP 일체)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가맹점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집기, 시설, 설비 등의 반환을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오·훼손,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에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음)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

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1[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 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당사는 개점 전 지정한 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요청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기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 제한 또는 2회 서면요구 3회 위반 : 갱신 거절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 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별첨1, 참조)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크래프트 상품 판매	공작인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반경 1.0Km 이내 (상권특성 고려해서 결정)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 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가맹점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	100%	-	-

당사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판매 정책 수립에 필요한 테스트 판매만을 간헐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매출 규모가 미미하여, 온라인 매출 비중 산출이 의미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원.부재료 공급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37 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장비·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와 상품·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지도, 원부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 기법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작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POS프로그램 사용의 임의중단, 매출등록 누락, 허위 등록 및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브랜드 품위 훼손, 경영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장 위치변경을 한 경우 ○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	가맹계약서 제 38 조

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원·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서비스 등), 판매방법, 가격,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또는 고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 및 상품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및 경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	가맹계약서 제 38 조

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 가맹점에게 계약서 37조, 38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문의: 가맹본부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체결된 영업양도 등의 계약은 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이나 로열티 등 금전적인 미지급금 등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며,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⑥ 영업양수인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서 제35조 제5항에 따른 최초 가맹비를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⑦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비(550만원, VAT포함), 교육비(330만원, VAT포함), 보증금 1,500만원(VAT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⑧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제18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⑨ 영업양수인과 가맹점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영업양도일 이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①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가맹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함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공작인]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공작인의 동일한 종류의 상품 판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① 당사는 [공작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1시간	주 6일 이상 (명절 연휴 3일 휴무 가능)	문의: 가맹본부

②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휴업하기 7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1 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가맹본부의 사전 교육을 받은 인력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①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매출 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	브랜드 및 상품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 분담 내역 통지 →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입 → 광고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지역단위 광고	매출활성화	없음	100%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분담 단독광고
점포단위 단독광고	매출활성화	없음	100%	단독광고를 실시하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 ① 할인행사의 경우 전국단위 광고.판촉의 브랜드 광고에 준하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②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③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④ 당사의 계획, 주관하는 이동통신 제휴, 신용카드 제휴 등과 같은 각종 제휴 행사진행 시 귀하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귀하는 이에 협조하여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단, 참여의사가 없을 시 귀하는 당사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업체 제휴 행사진행 시 제휴 업체와 당사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단독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판촉활동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상생협력 마케팅 판촉 실행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상생협력 마케팅을 실행하며 이를 위해 가맹점 물류 매출액의 일정액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계약종료 후에도 당사가 대여·제공하는 운영 매뉴얼, 영업방식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당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인쇄, 복사, 대여, 공개, 열람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4)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 상 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종료 시 가맹계약서 제43조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일금일십만원(₩100,000)의 지연 손해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 일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0조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 일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의 지급 요청일에 가맹점사업자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50일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고객 정보	3~5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수령 14일후에 계약)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점포선택	- 투자비 산출	3일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 인테리어	20일~30일	
교육 실시	- 운영교육 실시	5일	
인허가 취득	-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등록	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점포 구매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세부사항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 일 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 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공작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신상품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상품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공작인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6일 (이론/현장교육)	3,300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 교육에 수반되는 교통비/숙식/식비는 자부담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이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직영점은 백화점에 입점하여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62,600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공급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판매상품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